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5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2

가. 적용기한 연장 (엄태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7

나. 세액감면기한 연장 (최은석의원안) ····· 10

2.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수입 자본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11

Ⅰ. 개요

1.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85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주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0. 23.

(3) 회 부 일 : 2024. 10.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엄태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제104조의24)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로 완전 또는 부분 복귀한 기업	○ (현행과 같음)
○ 세액감면율	○ 세액감면율:
-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 7년 100% + 3년 50%	-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 (현행과 같음) (엄태영·한병도·윤준병·김주영·정태호의원안, 정부안) 9년 100% + 5년 50% (최은석의원안)
- 수도권 내 부분복귀: 3년 100% + 2년 50%	- (현행과 같음)
○ 업종요건: 국외사업장과 국내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4.12.31.	○ 적용기한 - 2026.12.31.(엄태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 2027.12.31.(한병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2029.12.31.(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2025. 1. 1.

* 엄태영의원안 2024. 6. 17. 발의(의안번호 526), 한병도의원안 2024. 7. 5. 발의(의안번호 1413), 최은석의원안 2024. 7. 24. 발의(의안번호 2186),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김주영의원안 2024. 10. 23. 발의(의안번호 485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7건의 개정안은 국내에 복귀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2년~5년 연장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세제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내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최은석의원안은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의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의 규정에 따른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제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이후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제도 도입시에는 해외사업장을 완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완전복귀의 경우에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였으며, 감면을 받기 위한 복귀지역은 수도권 밖으로 한정하였고, 2013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제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면서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으며, 동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음. 부분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것은 완전복귀 이외에는 대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1)]

2016년 시행 법률에서는 동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도까지 연장하였고, 2017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세액감면 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에

1)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검토보고서, 2012.10., p.147

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임.

또한, 2019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을 대기업까지로 확대하면서,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100% 세액감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였음.

이후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법률에서는 창업 및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을 통한 국내복귀의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감면대상 복귀방법을 확대하였으며, 2021년 세법개정에서는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2024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음.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2024년 시행 법률에서는 완전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과 지원기간을 최초 7년간 100%와 이후 3년간 50%로 확대하였음.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주요 변화]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2011</th><th>2013</th><th>2016</th><th>2017</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4</th></tr>
<tr><td rowspan="4">세액감면대상 및 감면율</td><td>완전 복귀</td><td>모든 기업</td><td>모든 기업</td><td>모든 기업</td><td>모든 기업</td><td>모든 기업</td><td>증설 추가</td><td colspan="2">모든 기업</td></tr>
<tr><td>감면율</td><td colspan="6">5년간 100% + 2년간 50%</td><td>7년간 100% +3년간 50%</td></tr>
<tr><td>부분 복귀</td><td>-</td><td>중소 기업</td><td>중소 기업</td><td>중소·중견기업</td><td>모든 기업</td><td>증설 추가</td><td colspan="2">모든 기업</td></tr>
<tr><td>감면율</td><td>-</td><td colspan="3">3년간 100% + 2년간 50%</td><td colspan="3">5년간(수도권 3년간) 100%+2년간 50%</td><td>(수도권) 3년간100% +2년간 50% (비수도권) 7년간100% +3년간 50%</td></tr>
</table>

세액감면대상 복귀지역	수도권 밖	수도권 밖	수도권 밖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적용기한	2012년말	2015년말	2018년말	2018년말	2021년말	2024년말

동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을 보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액 감면실적은 2014년도 1,000만원에서 2023년도에는 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및 2025년에도 감면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실적]

(단위:억원)

신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세	0.1	0.1	0.1	0.2	0.4	0.1	0	0	0	0	0	0
법인세	-	3.7	5.7	2.3	2.8	8	1.6	3	8	12	59	61
합계	0.1	3.8	5.8	2.5	3.2	8.1	1.6	3	8	12	59	61

주) 2024년 및 2025년은 전망치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실적은 시기별로 등락을 보여 왔으나,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71개사가 국내복귀하는 등 전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투자환경 속에서 복귀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4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46개사가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특히 2023년 국내복귀기업 22개사 중 중견·대기업의 비중은 40.9%(9개)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현황]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현황) 법률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26개社

○ 연도별: ('14)15 → ('15)2 → ('16)10 → ('17)4 → ('18)8 → ('19)14 → ('20)23 → ('21)26 → ('22)24 → ('23)22

○ 진출국가별: 중국 113, 베트남 16, 미국 4, 필리핀 2, 인도네시아 2, 멕시코·대만·일본·인도·미얀마·방글라데시 9

○ 기업규모별: 대기업 4, 중견기업 34, 중소기업 108

○ 업종별

전자	자동차	금속	기계	주얼리	화학	신발	섬유	포장재	기타	계
41	30	17	11	11	9	8	6	5	8	146

○ 국내복귀지역

충남	전북	경기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구	충북	세종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계
19	19	20	24	17	14	7	8	6	3	3	2	3	1	146

< 국내복귀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추이 (단위 : 개社)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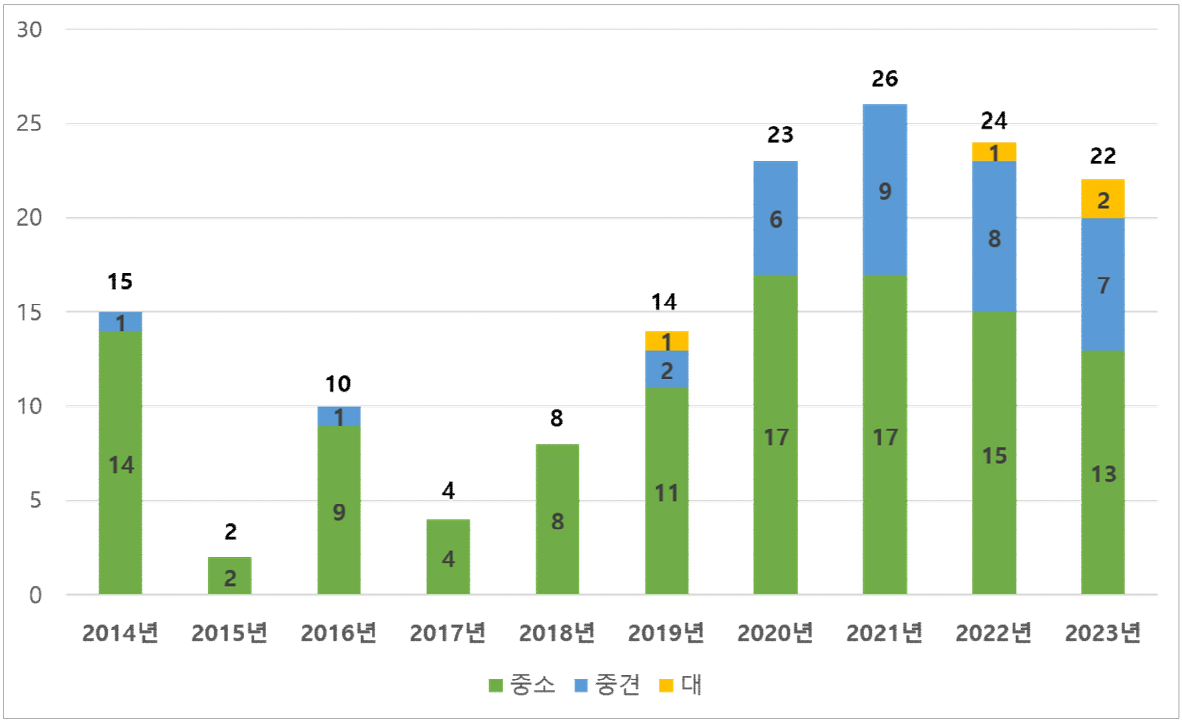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가.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개정안은 2024년말 일몰이 예정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2년~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음.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복귀기업 수의 증가와 함께 2014년 745억원에서 2023년 1조 1,361억원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 고용계획 규모 또한, 2014년 685명에서 2022년 1,794명, 2023년 1,281명으로 증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 규모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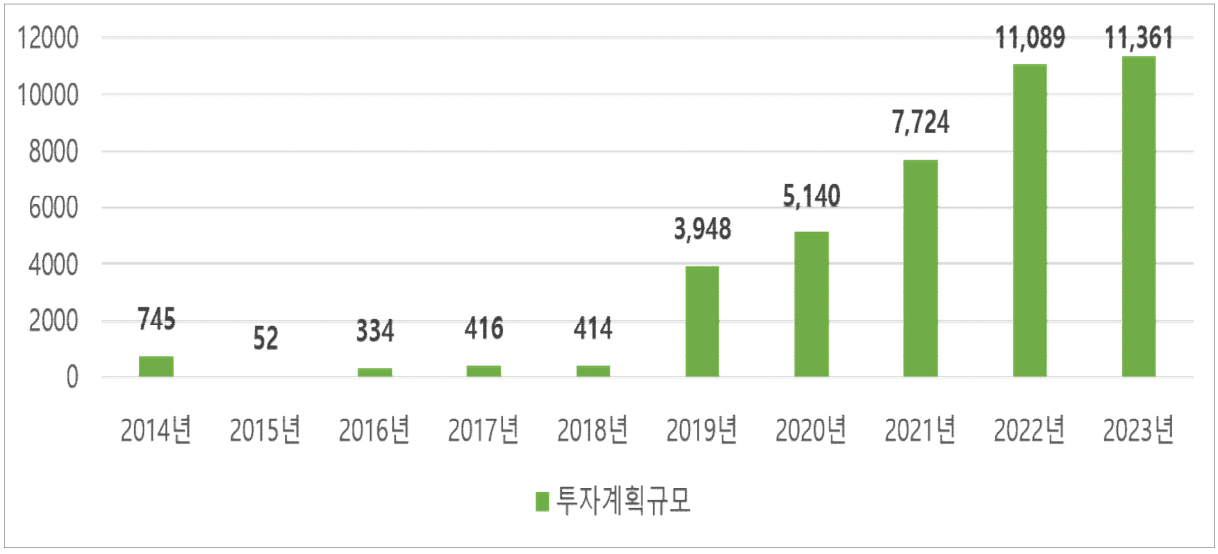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기업 고용계획 규모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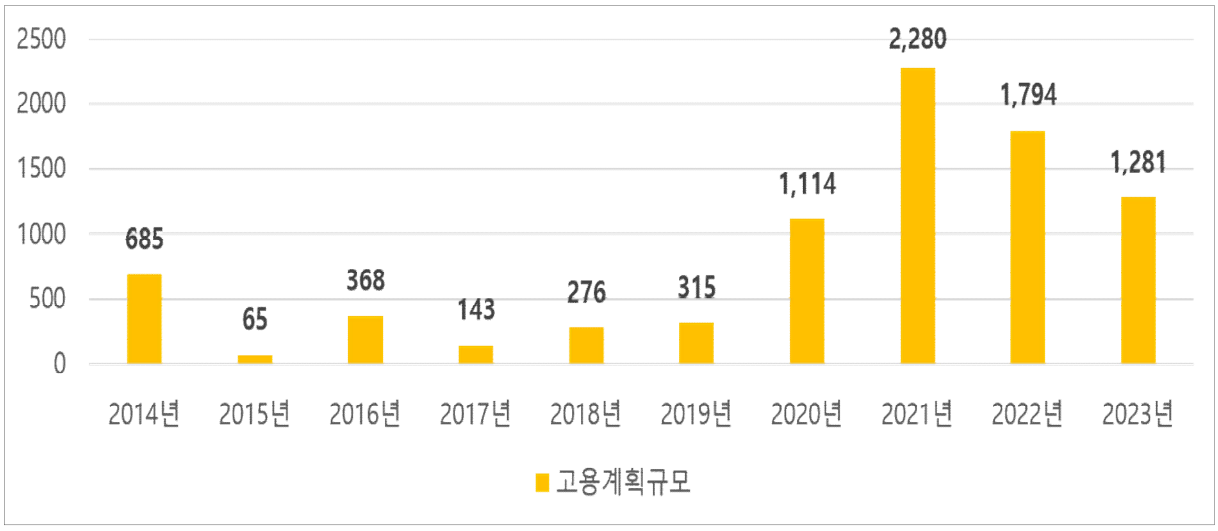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로,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외진출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보조금 지원(49.7%), 법인세(소득세) 감면(26.6%), 금융(대출/보증) 지원(6.5%), 자동화 설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4.7%) 등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2)]

둘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는 국내 자체 공급망 확보를 통하여 예상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활동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수입은 주로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통상환경 급변 등 예상하지 못한 국제적인 충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의 전략이 필요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년 해외진출기업 경영현황 및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보고', 2023.

특히 과거 생산비용의 절감방식에서 공급망 안정 위주로 산업구조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공급망의 내부화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동 제도에 따른 세액 감면실적이 2023년 기준 12억원에 불과하여 과세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개정안은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년~5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세액감면 기간 연장 (최은석의원안)

□ 최은석의원안은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의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7년 100% + 3년 50% → 9년 100% + 5년 50%)으로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율 및 지원기간이 다른 세액감면 대비 높은 수준인 점, 지원대상이 지속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세액공제 기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는 것은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3], 제주투자진흥지구[4], 기업도시[5] 등 다른 세액감면 제도와 비교해볼 때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2019년 대기업이 부분복귀(해외 생산량 축소)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으로 포함하였고, 2020년 3월 국내사업장 신설이 아닌 증설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3) 5년간 100% + 2년간 50%

4) 3년간 100% + 2년간 50%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3년간 50% + 2년간 25%)

5) 3년간 100% + 2년간 50%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3년간 50% + 2년간 25%)

2.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수입 자본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수입 자본재 관세 감면(제118조의2)	□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 - 완전복귀: 100% - 부분복귀: 50%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김주영의원안:2026년 12월 31일 - 정부안·한병도·정태호의원안: 2027년 12월 31일 - 윤준병·최은석의원안: 2029년 12월 31일

* 한병도의원안 2024. 7. 5. 발의(의안번호 1413), 최은석의원안 2024. 7. 24. 발의(의안번호 2186),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3085), 김주영의원안 2024. 10. 23. 발의 (의안번호 485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4975), 정부안 2024. 9. 2. 발의 (의안번호3522)

□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하는 경우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김주영의원안은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정태호의원안, 한병도의원안은 2027년까지 3년, 윤준병·최은석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완전복귀 귀업은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100% 감면하고, 부분복귀 기업은 관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

1) 「조세특례제한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수입자본재 관세감면은 2013년도에 도입되어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관세감면을 적용[7] 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관세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감면한도를 과거보다 2배 상향하였으며[8], 2019년도부터는 감면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한도 제한을 폐지하였음.

□ 최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을 보면, 국내복귀기업 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국내복귀기업이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국제 정세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체계의 안정적 구축 및 첨단산업의 유턴투자 촉진을 위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였고, 이는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 및 요건을 완화하고,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023년 570억원→2024년 1,000억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9]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내국인일 것
2.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완전복귀의 경우 관세의 100%를, 부분복귀의 경우 관세의 50%를 각각 감면함.

8) 완전복귀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부분복귀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함.

9)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2024. 5. 7.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현황

□ (유턴기업 선정 현황)

○ 2020년 이후 연 20개 기업 이상 복귀 중임 ('14~'19: 연평균 8.5개, '20~'23: 연평균 23.8개)

○ 연도별 유턴투자규모(억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3,948	5,400	7,715	11,078	11,361

○ 복귀 기업의 81.5%는 비수도권을 복귀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충남 19개, 경북 24개, 전북 14개, 부산 14개, 대구 8개 등)

※ 유턴기업들은 2023년 기준 약 1,281명 고용 투자계획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진출기업의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지속적인 세제지원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함으로써 국내 산업활동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성공적인 '리쇼어링(re-shoring)[10)]'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2022년 기준 5조 2,548억 1,600만불의 FDI 유입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기업이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2022년 기준 누적 36만 4,904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11)] 우리나라의 경우 상기 자료와 같이 국내복귀 기업의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대 국내복귀 리쇼어링 기업은 오프쇼어링 및 확장기업[12)]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

10)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함(한경 경제용어사전).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례로 보는 미국 공급망 재편 동향', 2024. 7.

12) 확장기업: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투자하는 기업, 오프쇼어링 기업: 국내에서는 투자를 회수 또는 유보하

이 낮은 특징을 갖는 편으로 나타나고 있어[13]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임.

둘째, 국내복귀를 고려하는 해외진출기업들이 조세지원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가 일정부분 실효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실태분석 조사에 따르면 국내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법인세 등 감면(40%)과 이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28%) 등이 지목되고 있음[14].

□ 한편, 김주영의원안은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안과 한병도의원안, 정태호의원안은 2027년 12월 31까지로, 윤준병의원안과 최은석의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간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평가를 의무화[15]하고 있으므로, 적용기한

고 해외에서만 투자하는 기업

13)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 결정 요인, KDI FOCUS, 2023.11.

14) 참고로 중복응답을 허용한 수치임(KOTRA, '중국 및 동남아 진출 우리기업 실태조사 분석', 2016.11, p.96)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

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